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요시

의안번호	17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 1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 정 이 유

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(1991. 5. 31, 제4370호)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.

3. 첨 부

가.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